

『러시아, 적합성 선언 및 인증서 절차 개정안』

2026. 04. 24.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러시아	전년도 수출액 (천불)	4,043,622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러시아는 타 EAEU 회원국에서 등록·발급된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인증서에 대해, 러시아 내 정보조회, 효력 정지·종료 및 정보공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함
- (적용범위) 전 제품*
 - * EAEU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으로, 타 EAEU 회원국에서 등록된 적합성 선언 또는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가 수반되는 제품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타 EAEU 회원국 발급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의 정보조회 근거를 마련함
 - 선언·인증서의 러시아 내 효력정지·효력종료 요건을 구체화함
 - 효력정지·효력종료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다른 주요국은 자국 적합성평가·시장감시 중심인 반면, 러시아는 타 회원국 발급 문서에 대한 통제 강화에 중점을 둠
 - (중국) CCC 및 시장감시 중심 체계 운영
 - (일본) 제품안전 4법과 온라인 유통 사후관리 강화 중심 운영
 - (EU) CE 표시, EU 적합성선언 및 시장감시 중심 체계 운영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본 규제는 신규 인증 의무 도입보다, 타 EAEU 회원국 발급 적합성평가 문서에 대한 러시아 내 사후통제와 정보공개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됨
- (권고사항) ①시험성적서 및 근거자료의 진위·유효성 확인, ②시료 반입 및 시험 이력 증빙 보관, ③효력정지·종료 공시 정기 점검, ④인증기관·시험기관의 이력 사전 확인 필요 등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기술 대응 부담 증가) 시험성적서, 시료 반입 이력 및 관련 증빙이 미비한 경우 러시아 내 효력정지·효력종료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품질관리 부담 확대) 적합성 선언·인증서와 관련 증빙의 사전 확인 및 문서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발급 문서 해당 여부 및 기본 증빙 사전 점검
 - (중견기업) 근거자료 관리 및 공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기업) 인증기관·시험기관 점검 및 공급망 차원의 문서관리 통합 대응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3
III. 관련 인증 정보	7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8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8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9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0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0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1
VI. 대응 방안	12
참고 1 참고자료	13
참고 2 규정(전문) 원문 번역본	14

요 약 문

규 제 명	영문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Suspension, Renewal and Cancellation of Declarations and Certificates of Conformity, Resolution No. 936, 2021 and Other - Amendment - (on suspension and validity of declarations of conformity within EAEU) Resolution No. 87, 2026		
	국문	적합성 선언 및 인증서의 등록, 정지, 갱신 및 취소 절차, 2021년 제936호 결의안 및 기타 - 개정안 - (EAEU 내 적합성 선언의 정지 및 유효성에 관한) 2026년 제87호 결의안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러시아	
채택(예정)일	2026.02.06	시행현황	개정 최종안	
시행(예정)일	2026.02.07	통보일(고시일)	2026.02.07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	
총 수출액 (천불)	683,525,430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4,043,622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연방 정부 ▪ Russian Federation Government 		
	규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EAEU 회원국 발급 적합성 선언·인증서의 러시아 내 효력통제 및 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EAEU 회원국 발급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의 정보조회 근거를 마련함 ▪ 선언·인증서의 러시아 내 효력정지·효력종료 요건을 구체화함 ▪ 효력정지·효력종료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인증의무 도입보다는, 타 EAEU 회원국 발급 적합성평가 문서에 대한 러시아 내 사후통제와 정보공개를 강화한 규제임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시험성적서, 시료 반입 이력 및 관련 증빙이 미비한 경우 러시아 내 효력정지·효력종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적합성평가 문서와 관련 증빙의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성적서, 시료 반입 이력 및 적합성 입증자료의 진위와 유효성 사전 점검 ▪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의 효력정지·효력종료 공시를 정기적으로 확인 ▪ 인증기관·시험기관 선정 시 과거 효력정지 이력과 문서 적정성 사전 점검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발급된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러시아 내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함
 -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의 정보조회 권한과 러시아 영토 내 효력 정지·종료 근거를 구체화함

□ 규제 요지

- 본 개정은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인증서의 정보조회, 효력 정지·종료, 정보공개 및 무효 인정 적용범위를 규정
 - 정부결정 제1856호 : 타 EAEU 회원국 인정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발급된 인증서에 대해, 러시아 인정기관의 정보조회 근거를 마련
 - 정부결정 제936호 : 시험성적서 정보 부재, 안전성 지표 불일치, 시료 반입 사실 미확인, 시험성적서 미발급 통보 시 선언·인증서의 러시아 내 효력정지 근거를 마련
 - 반복 효력정지된 선언·인증서에 대한 효력종료, 관련 정보공개 및 무효 인정 적용범위 조정 사항을 규정

□ 적용대상

- (HS코드) 전 제품*

* EAEU(관세동맹) 기술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 중, 다른 EAEU 회원국에서 등록된 적합성 선언 또는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가 수반되는 제품

□ 시행일

- 2026년 2월 7일(공식 공포일)부터 시행

2

규제 세부 내용

□ 세부내용

- 러시아연방 정부결정 제87호(2026.2.6.) 「러시아연방 정부의 일부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의 주요 개정사항

대상 법령	개정 대상 조문	개정 유형	개정 내용
2020.11.18. 정부결정 제1856호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및 등록된 적합성 선언 등록부의 형성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록부 형성·관리 규정 제7항	단락 추가	인증 방식상 공인 시험실(센터)에서의 연구(시험)· 측정 실시가 요구되고, 다른 EAEU 회원국 인정기관이 인정한 공인 시험실(센터)의 시험성적서(연구[시험] 및 측정 프로토콜)를 근거로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이 해당 회원국 인정 기관에 시험실의 인정 유효 상태 및 시험성적서 상태에 관한 정보 요청을 발송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21.6.19. 정부결정 제936호 「적합성 선언의 등록·효력정지·효력 재개·효력종료 및 무효 인정 절차와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정지·효력재개· 효력종료 및 무효 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	적합성 선언 관련 규칙 제28 ¹ 항	전면 개정	다른 EAEU 회원국에 등록된 적합성 선언의 러시아 영토 내 효력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세관당국이 ① 선언 근거 시험성적서 정보 부재, ② 실제 안전성 지표값과 기술규정상 지표 불일치, ③ 적합성 확인용 시료 반입 사실 미확인을 통보한 경우 및 다른 EAEU 회원국 인정기관이 선언 등록의 근거가 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경우,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이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적합성 선언 관련 규칙 제28 ¹ -1항	신설	동일 인증기관이 다른 EAEU 회원국에서 등록된 적합성 선언이 1년 내 3회 이상 러시아 영토 내에서 효력 정지된 경우, 마지막 효력정지 결정일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해당 인증기관이 등록한 모든 적합성 선언의 러시아 영토 내 효력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적합성 선언 관련 규칙 제28 ³ 항 제2문단	문구 개정	제28 ¹ 항 및 제28 ¹ -1항에 규정된 결정이 내려진 적합성 선언 관련 정보를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

대상 법령	개정 대상 조문	개정 유형	개정 내용
	적합성 선언 관련 규칙 제31항 제1문단	문구 개정	적합성 선언 무효 인정 사유 규정에서, 제28 ¹ 항에 해당하는 적합성 선언은 제외하도록 명시함
	적합성 인증서 관련 규칙 제14 ¹ 항	전면 개정	다른 EAEU 회원국에서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의 러시아 영토 내 효력정지 사유를 구체화함: 세관당국이 ① 인증서 발급 근거 시험성적서 정보 부재, ② 실제 안전성 지표값과 기술규정상 지표 불일치, ③ 적합성 확인용 시료 반입 사실 미확인을 통보한 경우 및 다른 EAEU 회원국 인정기관이 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경우,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이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적합성 인증서 관련 규칙 제14 ¹ -1항	신설	동일 인증기관이 다른 EAEU 회원국에서 발급한 적합성 인증서가 1년 내 3회 이상 러시아 영토 내에서 효력정지된 경우, 마지막 효력정지 결정일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해당 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적합성 인증서의 러시아 영토 내 효력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적합성 인증서 관련 규칙 제14 ³ 항 제2문단	문구 개정	제14 ¹ 항 및 제14 ¹ -1항에 규정된 결정이 내려진 적합성 인증서 관련 정보를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
	적합성 인증서 관련 규칙 제18항 제1문단	문구 개정	적합성 인증서 무효 인정 사유 규정에서, 제14 ¹ 항에 해당하는 적합성 인증서는 제외하도록 명시함

□ 주요 개정사항

- EAEU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발급된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러시아 내 사후통제를 강화함
 - 타 EAEU 회원국 인정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인증서가 발급된 경우,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이 해당 인정기관에 관련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EAEU 회원국 등록 적합성 선언의 러시아 영토 내 효력정지 사유를 명확히 함
 - 적합성 선언의 근거 시험성적서 정보가 없는 경우,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세관 감정 결과 실제 안전성 지표값이 기술규정상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적합성 확인용 제품 시료(샘플)의 반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타 EAEU 회원국 인정기관이 선언 등록의 근거가 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경우에도,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반복적으로 효력정지된 적합성 선언을 등록한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 동일 인증기관의 적합성 선언이 1년 내 3회 이상 효력정지된 경우, 이후 12개월간 해당 기관이 등록한 모든 선언의 러시아 영토 내 효력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적합성 선언 관련 정보공개 및 무효 인정 적용범위를 조정함
 - 효력정지 또는 효력종료 결정이 내려진 적합성 선언 관련 정보를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 공식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
 - 제28¹항에 해당하는 적합성 선언은 일반적인 무효 인정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타 EAEU 회원국 발급 적합성 인증서의 러시아 영토 내 효력정지 사유를 명확히 함
 - 적합성 인증서 발급의 근거 시험성적서 정보가 없는 경우,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세관 감정 결과 실제 안전성 지표값이 기술규정상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적합성 확인용 제품 시료(샘플)의 반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타 EAEU 회원국 인정기관이 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경우에도,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반복적으로 효력정지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
 - 동일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서가 1년 내 3회 이상 효력정지된 경우, 이후 12개월간 해당 기관이 발급한 모든 인증서의 러시아 영토 내 효력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적합성 인증서 관련 정보공개 및 무효 인정 적용범위를 조정함
 - 효력정지 또는 효력종료 결정이 내려진 적합성 인증서 관련 정보를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 공식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
 - 제14¹항에 해당하는 적합성 인증서는 일반적인 무효 인정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인증 절차

- 인증 절차 자체보다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의 정보조회 및 효력 점검 근거를 규정함
 - 타 EAEU 회원국 인정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발급된 인증서에 대해,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인증서에 대해 러시아 영토 내 효력정지·효력 종료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사후관리

- 적합성 선언 및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강화함
 - 시험성적서 정보 부재, 안전성 지표 불일치, 시료 반입 사실 미확인, 시험성적서 미발급 통보 시 효력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 동일 인증기관의 선언·인증서가 1년 내 3회 이상 효력정지된 경우, 이후 12개월간 해당 기관이 등록·발급한 모든 선언·인증서의 러시아 영토 내 효력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효력정지 또는 효력종료 정보는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 공식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

□ 적합성평가 기관

-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 타 EAEU 회원국 국가 인정기관 및 공인 시험실(센터)이 관련 기관으로 규정됨
 -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은 정보조회, 효력정지·효력종료 및 정보공개 권한을 가짐
 - 타 EAEU 회원국 국가 인정기관과 공인 시험실(센터)은 시험성적서 및 인정 상태 확인과 관련됨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중국

- (현행 규정) 중국은 CCC, 인증기관·시험검사기관 지정, 제품 품질 감독 및 결함제품 리콜 중심의 적합성평가·시장감시 체계를 운영함
- (도입동향) 최근에는 역외 문서 효력통제보다는 온라인 판매 제품을 포함한 품질감독과 인증·표준 정보공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자국 인증 및 시장감시 체계 중심 운영

2

일본

- (현행 규정) 일본은 제품안전 4법에 따라 제조·수입사업자의 기술기준 적합 및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 확인을 요구함
- (도입동향) 2024년 개정 제품안전 4법을 통해 해외 온라인 판매 사업자, 국내관리인 및 디지털플랫폼 관련 의무를 도입하는 등 사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온라인 유통 및 사후관리 강화 중심으로 운영

3

EU

- (현행 규정) EU는 CE 표시, EU 적합성선언, 제조자·수입자 책임 및 시장감시를 중심으로 적합성평가 체계를 운영함
- (도입동향) 최근에는 시장감시 규정과 일반제품안전규정(GPSR)을 통해 온라인 유통, 리콜 통지 및 경제주체 책임을 강화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공통 적합성요건과 시장감시당국의 시정·제한·철회 조치를 중심으로 운영함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러시아	중국	일본	EU
규제 성격	EAEU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발급된 적합성 선언·인증서의 러시아 내 사후통제 강화 규제	강제성 제품인증(CCC) 및 시장감시 중심 체계	국내 적합성평가 및 등록검사기관 활용 체계	CE 표시, 적합성선언 및 시장감시 중심 체계
적용 대상	EAEU 기술규정 적용 제품 중 타 EAEU 회원국에서 등록·발급된 적합성 선언·인증서가 수반되는 제품	중국 내 강제 인증 또는 감독 대상 제품 중심	개별 법령상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EU 조화입법 적용 제품 중 CE 표시 대상 제품 중심
사후관리 방식	효력정지·효력종료, 반복 위반 기관 문서의 일괄 효력종료 가능	인증·표시·시장감독 중심	사고보고·리콜·유통후 관리 중심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의 시정·제한·철수 조치 중심
정보공개	효력정지·효력종료 정보를 국가 인정기관 공식 사이트에 게시	인증·행정정보 공시 중심	리콜 정보 공개 중심	시장감시 및 제품 안전정보 공개 체계 운영
제도적 특징	역내 상호인정 문서 남용 방지와 러시아 내 효력통제에 초점	국가 주도 인증·시험기관 지정형	국내 기준 적합성 확보 중심	단일시장 유통과 제조자 책임, 시장감시 결합형

※ 위 표는 러시아 개정 규정과 동일 성격의 규정 간 직접 비교가 아닌, 해외 발급 문서 관리, 사후통제, 정보공개라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적합성평가 및 시장감시 체계를 개괄적으로 비교함

5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적합성 선언 및 인증서의 등록, 정지, 갱신 및 취소 절차, 2021년 제936호 결의안 및 기타 - 개정안 - (EAEU 내 적합성 선언의 정지 및 유효성에 관한) 2026년 제87호 결의안
관리기관	러시아 연방 정부(Russian Federation Government)
법적근거	정부결정 제87호(2026.2.6.)에 따른 정부결정 제1856호 및 제936호 개정
주요목적	타 EAEU 회원국 발급 적합성 선언·인증서의 러시아 내 효력통제 및 사후관리 강화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적용 대상	EAEU 기술규정 적용 제품 중, 타 EAEU 회원국에서 등록·발급된 적합성 선언·인증서가 수반되는 제품에 적용됨
정보조회	타 EAEU 회원국 인정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발급된 인증서에 대해,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효력정지 요건	시험성적서 정보 부재, 안전성 지표 불일치, 시료 반입 사실 미확인, 시험성적서 미발급 통보 시 효력정지가 가능함
반복 위반 조치	동일 인증기관의 선언·인증서가 1년 내 3회 이상 효력정지된 경우, 이후 12개월간 해당 기관 문서의 러시아 내 효력을 종료할 수 있음
정보공개	효력정지 또는 효력종료된 선언·인증서 관련 정보를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 공식 사이트에 게시해야 함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타 EAEU 회원국 발급 문서의 신뢰성 확인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비차별성	타 EAEU 회원국 발급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역내 관리조치 성격임
최소무역제한성	신규 인증 의무는 없으나, 효력정지·효력종료 강화로 시장 접근 제약 가능성이 있음
투명성	관련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강화함

○ 결론 및 권고 사항

- (준수사항) 러시아 수출 시, 타 EAEU 회원국에서 발급·등록된 적합성 선언·인증서의 근거 시험성적서, 시료 반입 이력 및 적합성 입증자료를 사전에 점검해야 함
- (규제영향) 러시아는 타 EAEU 회원국 발급 문서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관련 문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러시아 내 효력정지·효력종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①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선언·인증서의 근거자료 진위 및 유효성 사전 확인, ②시료 반입 및 시험 이력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 ③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의 효력정지·효력종료 공시를 정기적으로 확인, ④인증기관·시험기관 선정 시 과거 효력정지 이력 점검 등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본 규제는 타 EAEU 회원국 발급 적합성 선언·인증서에 대한 러시아 내 정보조회, 효력통제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임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사항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사항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6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적합성 문서 및 근거자료 사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 제품에 적용된 적합성 선언·인증서가 타 EAEU 회원국 발급 문서인지 확인 - 시험성적서, 시료 반입 이력 및 적합성 입증자료의 보유 여부와 유효성을 사전 점검
중견 기업	효력정지 리스크 관리 및 문서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성적서, 선언·인증서 근거자료 및 시료 반입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 - 러시아 국가 인정기관의 효력정지·효력종료 공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대응 절차를 마련
대기업	인증기관·시험기관 관리 및 공급망 통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신뢰성, 과거 효력정지 이력 및 문서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 계열사·협력업체·시험기관을 포함한 공급망 차원의 적합성 문서 관리 및 사후 대응체계를 통합 운영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 참고자료

- 러시아연방 정부결정 제87호(2026.2.6.) 「러시아연방 정부의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 [LINK](#)
- 러시아연방 정부결정 제1856호(2020.11.18.)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및 등록된 적합성 선언 등록부의 형성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 러시아연방 정부결정 제936호(2021.6.19.) 「적합성 선언의 등록·효력 정지·효력재개·효력종료 및 무효 인정 절차와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효력재개·효력종료 및 무효 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연방 정부

결정

2026년 2월 6일 제87호

모스크바

러시아연방 정부의 일부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러시아연방 정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첨부와 같이 러시아연방 정부의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을 승인한다.
2. 이 결정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의견 제출 시, 알고 계신 관련 특허가 있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연방 정부 의장

전자서명으로 서명된 문서
1696248EA9795C5451F98A54ABCDB8A9
유효기간: 2025.06.26. ~ 2026.09.19.
소유자: 러시아연방 정부

M. 미슈스틴

개정사항

러시아연방 정부의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

1. 2020년 11월 18일자 러시아연방 정부 결정 제1856호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및 등록된 적합성 선언의 등록부 형성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러시아연방 법령집, 2020년, 제47호, 제7555조; 2021년, 제26호, 제4959조)으로 승인된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및 등록된 적합성 선언의 등록부 형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항에 다음 내용을 단락으로 추가한다.

“인증 방식에서 공인 시험실(센터)에서의 연구(시험) 및 측정 실시가 규정되어 있고, 적합성 인증서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다른 회원국 국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시험실(센터)의 시험성적서(연구[시험] 및 측정 프로토콜)를 근거로 발급된 경우, 국가 인정기관은 해당 시험실(센터)의 인정 유효 상태 및 시험실(센터)의 시험성적서(연구[시험] 및 측정 프로토콜)와 그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기 위하여 해당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국가 인정기관에 요청을 발송하기로 결정한다.”

2. 2021년 6월 19일자 러시아연방 정부 결정 제936호 「적합성 선언의 등록, 효력 정지, 효력 재개 및 효력 종료 절차, 그 무효 인정 절차와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효력 재개 및 효력 종료 절차 및 그 무효 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러시아연방 법령집, 2021년, 제26호, 제4960조; 2025년, 제44호, 제6608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위 결정으로 승인된 「적합성 선언의 등록, 효력 정지, 효력 재개 및 효력 종료와 그 무효 인정에 관한 규칙」에서:

제28¹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¹. 유라시아경제연합(관세동맹)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으로서 그 적합성 선언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된 경우, 그러한 적합성 선언의 러시아연방 영토 내 효력 정지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가 인정기관이 내린다.

가) 러시아연방 세관당국으로부터 다음 정보가 접수된 경우: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된 제품이 적합성 선언에 의해 수반되고 있으나, 적합성 선언 방식에 따라 규정된 경우 적합성 선언 채택의 근거가 된 시험실(센터)의 시험성적서(연구[시험] 및 측정 프로토콜)에 관한 정보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러시아연방으로 반입 중이거나 이미 반입된 제품에 대하여 세관 감정 결과, 실제 안전성 지표값이 유라시아경제연합(관세동맹) 기술규정에 규정된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연구 및 시험 실시 목적으로 제품의 시료(샘플)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나)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국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선언 등록의 근거가 된 시험실(센터)의 시험성적서(연구[시험] 및 측정 프로토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접수된 경우.”

다음 내용을 제281-1항으로 추가한다.

“281-1.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인증기관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된 적합성 선언에 대하여 본 규칙 제21¹항 및/또는 제28¹항에 규정된 사유로 러시아연방 영토 내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가 인정기관은 마지막 적합성 선언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해당 인증기관이 등록한 모든 적합성 선언의 러시아연방 영토 내 효력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28³항 제2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규칙 제28¹항 및 제281-1항에 규정된 결정이 내려진 적합성 선언에 관한 정보는 국가 인정기관의 공식 인터넷 정보통신망 사이트에 게시된다.”

제31항 제1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 국가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 선언을 무효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본 규칙 제28¹항에 규정된 적합성 선언은 제외한다).”

나) 위 결정으로 승인된 「적합성 인증서의 효력 정지, 효력 재개 및 효력 종료와 그 무효 인정에 관한 규칙」에서:

제14¹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¹. 유라시아경제연합(관세동맹)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으로서 그 적합성 인증서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발급된 경우, 그러한 적합성 인증서의 러시아연방 영토 내 효력 정지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국가 인정기관이 내린다.

가) 러시아연방 세관당국으로부터 다음 정보가 접수된 경우:

러시아연방 영토로 반입된 제품이 적합성 인증서에 의해 수반되고 있으나, 의무 인증 방식에 따라 규정된 경우 적합성 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시험실(센터)의 시험성적서(연구[시험] 및 측정 프로토콜)에 관한 정보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러시아연방으로 반입 중이거나 이미 반입된 제품에 대하여 세관 감정 결과, 실제 안전성 지표값이 유라시아경제연합(관세동맹) 기술규정에 규정된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연구 및 시험 실시 목적으로 제품의 시료(샘플)가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나)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국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시험실(센터)의 시험성적서(연구[시험] 및 측정 프로토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접수된 경우.”

다음 내용을 제14¹-1항으로 추가한다.

“14¹-1.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동일한 인증기관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발급한 적합성 인증서에 대하여 본 규칙 제7¹항 및/또는 제14¹항에 규정된 사유로 러시아연방 영토

내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가 인정기관은 마지막 적합성 인증서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이후 12개월 동안 해당 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적합성 인증서의 러시아연방 영토 내 효력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14³항 제2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규칙 제14¹항 및 제14¹-1항에 규정된 결정이 내려진 적합성 인증서에 관한 정보는 국가 인정기관의 공식 인터넷 정보통신망 사이트에 게시된다.”

제18항 제1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국가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 인증서를 무효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본 규칙 제14¹항에 규정된 적합성 인증서는 제외한다).”